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인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안에 따라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하고,
-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외에 시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도록 함. (안 제3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나.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
(안 제42조의3제1항, 제42조의3제2항 신설)
- 다.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며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함.
(안 제3조제2항, 제43조 내지 제53조)

라.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제1종 궤련에 대하여 그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함. (안 제57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2000. 12. 15)으로 인하여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하고,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며,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여 시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법령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자동차세의 경우 새차와 헌차에 대한 차등과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